

# 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인사0110-1121	전결 규정 (전화번호 731-6222)	4 조 9항 전결사항 부시장
처리기간		시 장	
시행일자	85.7	1985. 7. 19	
보존연한		1985. 7. 11	
보조 기 관	부시장	전결	법무부장관 심사필
	내무국장	등기	
	인사과장	102	
기안책임자	박승룡	85.7	권오직 조
경유 수신 참조	각안참조 공고제 392호		
제 목	토목9급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		
(제 1안)			
수신	내부 결재		
제 목	갈 음		
1. '83년도 9급 토목직 신규채용시험에 합격되어 임용후보자로 등록된			
자로 명부 유효기간 (2년)내에 미임용된 자중 군입대자를 제외한 임용후보자를			
지방공무원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6.7.14.까지 유효기간을 1년			정서
연장 조치코자 합니다.			
가. 유효기간 : 1985. 7. 14.			
나. 연장인원 : 11 명 (명단 별첨)			판인
다. 연장기간 : 85.7.15 - 86.7.14 (1년간)			
라. 미 임용 사유			
지하철운영사업소, 지하철건설본부의 기구축소로 인한 정원 감축			발송
으로 임용 지연			
첨부			

1205-25(2-1)A(강)  
1981. 12. 10승인

정직 질서 창조  
6-1

190mm x 268mm (인쇄용지 200mm x 268mm)  
가 33 - 41 1984. 1. 16. 3



명부 유효기간 연장 대상자

등록번호	성명	성별	생년월일	직별	직급	유효기간	연장기간
109	김성술	남	57.11.3	토목	9급	85.7.14	86.7.13
110	정탁훈	"	58.1.4	"	"	"	"
111	허영업	"	59.2.13	"	"	"	"
112	이재호	"	59.3.29	"	"	"	"
113	김용희	"	57.9.6	"	"	"	"
114	노창근	"	58.12.27	"	"	"	"
115	이윤권	"	57.11.24	"	"	"	"
116	조용환	"	58.12.16	"	"	"	"
119	최희권	"	57.5.7	"	"	"	"
120	이한수	"	59.7.1	"	"	"	"
121	김태현	"	59.5.24	"	"	"	"
계	11명						

공 고 (안)

공고 제

호



첨자	1985. 7. 14	199. 2.
첨자	법제처장	법무부장
3	최익	[Signature]

지방공무원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기술직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을 연장 공고함.

다 음

등록번호	성 명	성별	년령	직렬	직급	명부유효연장기간	비 고
109	김성술	남	28	토목	9급	86.7.13	
110	정락훈	"	27	"	"	"	
111	허영엽	"	26	"	"	"	
112	이재호	"	26	"	"	"	
113	김용희	"	28	"	"	"	
114	노창근	"	27	"	"	"	
115	이운권	"	28	"	"	"	
116	조용환	"	27	"	"	"	
119	최희권	"	29	"	"	"	
120	이한수	"	26	"	"	"	
121	김태현	"	26	"	"	"	

1985. 7. .

서 울 특 별 시 장

6-4

176

불구하고 서울特別市·直轄市 및 道人  
事委員會에서 이를 實施한다.

(개정 78.12.6 법률 3152)

⑤ 任用權者는 第36條 및 第39條의 規  
定에 의하 新規任用후보자 또는 昇進候  
補者가 없거나 人事行政運營에 支拂  
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職의 新  
規任用 또는 昇進試驗에 상당한 國家  
또는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試驗에 合格  
한 者를 그 職의 新規任用 및 昇進試驗  
에 合格한 者도 보아 任用할 수 있다.

第33條 (平等의 原則) 公開競爭에 의한  
任用試驗은 同한 資格을 가진  
國民에게 平等하게 公開해야 하며  
試驗의 時期 및 場所는 應試者의 便의를  
考慮하여 決定해야 한다.

第34條 (受驗資格) 各種試驗의 受驗資格  
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第35條 (新規任用試驗의 公告) ① 公開競  
爭 新規任用試驗을 實施할 때에는 任用  
豫定職級·응시資格·선발예정인원·試  
驗의 方法·시기 및 場所 기타 必要한  
事項을 상당한 期間 公告하여야 한다.

② 缺員補充을 원활히 하기 爲하여 必  
需한 경우에는 군무예정지역 또는 군무  
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公開競爭 新規  
任用試驗을 實施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 
그 試驗에 依하여 任用된 公務員은 大  
統領令이 定하는 期間 當該 군무지역  
또는 군무기관에 근무하여야 한다.

第36條 (新規任用候補者名簿) ① 地方自  
治團體의 長은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人  
事委員會에서 實施한 新規任用試驗에  
合格한 者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 
따라 新規任用候補者名簿에 登載하여야  
한다.

② 第32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  
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이 5級公務員의  
新規任用試驗을 實施한 때에는 大統領  
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特別市長·  
直轄市長·道知事 및 教育감은 그 合格  
者를 新規任用候補者名簿에 登載하여야  
한다. (개정 78.12.6 법률 3152)

③ 新規任用候補者名簿는 누구든지 이  
를 閱覽할 수 있다.

④ 5級公務員 公開競爭 任用試驗에 合格  
한 者의 任用候補者名簿의 有効期間은  
5年으로 하고, 기타의 新規任用候補者  
名簿의 有効期間은 2年 범위 안에서 大  
統領令으로 정한다. 다만, 試驗實施機  
關의 長은 필요에 따라 1年의 범위 안  
에서 그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.

(개정 78.12.6 법률 3152)

⑤ 公開競爭 任用試驗 合格者가 任用候補  
者 登錄을 畢한 후 그 名簿의 有効期間  
內에 兵役法에 의한 兵役服務를 爲하여  
軍에 入隊한 경우(大學生 軍事訓練過程  
履修者를 포함한다)의 義務服務期間과  
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유로 任用되지  
못한 期間은 第4項의 期間에 算入하지  
아니한다. (개정 78.12.6 법률 3152, 81.  
4.20 법 3448)

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해 新規任用候補  
者名簿의 有効期間을 延長하는 경우엔  
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지체없이 이를 公  
告해야 한다.

(改正 66. 4.30 法 1794)

第37條 (新規任用方法) ① 第36條 第1項  
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新規任用  
候補者名簿를 作成한 地方自治團體의 長  
이 그 名簿에 登載된 者중에서 公務員

## 기술직신규임용후보자명부유효기간연장

1. 대상직급 : 토목직 9급
2. 등록일자 : 1983.7.15
3. 유효기간 : 1985.7.14 (등록일로부터 2년)
4. 연장사유
  - 지하철운영사업소 및 지하철건설본부 기구폐지통 토목직  
정원 감축으로 명부 유효기간내 일부 임용불가
5. 임용현황 - '85.7.10현재

83공채인원	임용인원	미 임 용			비 고
		계	군입대자	결원대기자	
121	107	14	3	11	

6. 유효기간 연장인원 - 11 명
7. 관계규정
  - 지방공무원법 제 36 조 - 신규임용후보자 명부
    - < 제 4 항 >
      - 6급이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- 등록일로부터 2년
      - 필요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- 1년 이내
    - < 제 5 항 >
      - 군입대자 의무복부기간은 유효기간에 미산입
    - < 제 6 항 >
      - 신규임용후보자 유효기간 연장시 즉시공고